

제3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2. 1. 6.)에서 의결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월 6일

고흥군의회 의장 송 영 현



규칙 제2022-45호

##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고흥군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71조 등”을 “제52조 및 제83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첨가서로 본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정한 회기(이하 “회기”라 한다)는 다시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63조제1항”을 “제7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제1항 중 “법 제66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7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

항 후단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의장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④의장은 군수제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할 경우에는 해당 재의요구안이 아닌 그 요구 대상안건에 관한 가부를 물은 표결결과에 따라 확정 또는 폐기를 선택한다.

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의장은 의회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원징계요구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 중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양정의 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.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,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.

제52조를 삭제한다.

제5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11. 표결수

#### 12. 표결방법 및 찬성·반대·기권의원의 성명

제56조제1항 전단 중 “일반”을 “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계제”를 “공개”로 한다.

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3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66조의4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 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2조제1항 중 “법 제79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 한다.

제94조제1항 중 “법 제87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법 제83조”를 “법 제95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52조 및 제83조 ----- ----- ----- -----



제23조의2(조례안의 입법예고) ①  
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 
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  
전문(신·구조문 대비표를 포함  
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 
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
게재하는 방법으로 법 제66조의  
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 
을 정하여 예고(이하 “입법예고  
라”라 한다) 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49조(표결방법) ①표결할 때에  
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  
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 
결정한다.

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  
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
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 
표결한다.

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  
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  
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 
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  
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 
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

제23조의2(조례안의 입법예고) ①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법 제77조제1  
항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표결방법) ①의장은 표결  
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  
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  
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  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 
투표로 표결한다.

<삭제>

③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1항-----  
-----  
-----.

④의장은 군수제출 재의요구안

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.

(기존 제41조에서 이동 2011.2.18.)

제51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·

② (생략)

<신설>

제52조(표결결과 선포) 표결이 끝

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지정된 회의장소의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

(기존 제44조에서 이동 2011.2.18.)

제53조(회의록의 작성)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1. ~ 10. (생략)

에 대하여 표결할 경우에는 해당 재의요구안이 아닌 그 요구 대상안건에 관한 가부를 물은 표결결과에 따라 확정 또는 폐기를 선포한다.

제51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의장은 의회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원징계요구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 중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양정의 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.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,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.

<삭제>

제53조(회의록의 작성) ①-----

-----  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

성명

<신 설>

12. ~ 14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.

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~ ⑤ (생 략)

<신 설>

제6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

11. 표결수

12. 표결방법 및 찬성·반대·기  
권의원의 성명

13. ~ 15. (현행 제12호부터  
제14호까지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 \_\_\_\_\_  
주민\_\_\_\_\_,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.

② \_\_\_\_\_ 공  
개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2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6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

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

한 법률,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  
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  
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 
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  
다. 이 경우 “제안자”는 “청  
구인의 대표자 등”으로 본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66조의3(주민조례청구 청구인  
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  
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  
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
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 
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  
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 
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 
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  
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 
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66조의4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 
및 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 
관한 법률」 제12조 에 따른 주  
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 
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  
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 
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

제82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 
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법 제79  
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  
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  
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
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 
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  
를 제출하게 한다.

② (생략)

제94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의  
장은 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징  
계대상의원(이하 징계대상자 라  
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  
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 
에 회부한다.

② (생략)

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  
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  
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  
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 
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

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  
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
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 
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 52조의2  
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 
한다.

제82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 
답변서 제출) ①----- 법 제91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4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--  
---- 법 제98조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법 제95조-----

3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 
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 
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  
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  
에게 제출한다.

④·⑤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